 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마수
			08.4.2(수) 조간부림 ※ 보도시 출처 생략	08.3	(사진 12매)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김낙빈 과장 / 김준기 사무관 02-2110-6746/ 010-5516-2046		

밀렵·밀거래 사범 무더기 적발

- ◆ 환경부, 지자체, 검·경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 ◆ 총기, 낚시, 올무 등을 이용한 밀렵·밀거래 사범 764명 적발

□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인 '07년 11월 1일부터 '08년 2월 29일까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764명의 밀렵·사범을 적발, 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 유형별로는 야간에 공기총 등을 이용한 총기밀렵이 전체 밀렵의 93.3%를 차지하였으며,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

(단위 : 명)

계	밀 렷					밀거래	엽구 제작	포획물 마신고	기타
	소계	총기	엽구	독극물	사냥견				
764	677	632	10	5	30	3	7	1	76

○ 지역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고 밀렵이 용이하여 밀렵꾼들의 유입이 많은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310명(41%)이 적발되었다.

□ 밀렵은 멸종위기종인 말뚝가리,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한 종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밀렵·밀거래 야생동물 현황>

(단위 : 마리)

계	멧돼지	고라니	노루	토끼	너구리	평	오리류	구렁이 까치살모사	기타
3,251	22	20	6	1	4	108	305	35	2,750

○ 이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일부 건강원·음식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거나 개인이 먹은 경우도 있어 적발·고발조치 되었다.

<사례1>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07.11.5 15: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한진리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뺨) 중탕을 시식하고 50만원에 구입하려던 A씨를 적발

<사례2> 독극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08.1.9 16:00 경기도 여주군 대안리 인삼밭부근에 독극물 법씨를 살포하여 평, 멧비둘기, 까치 등 28마리 폐사. 살포자인 인삼밭 인부 B씨 등 2명을 적발

<사례3>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07. 11.19 15:00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야산부근에서 사냥개 7마리와 불법엽구(창)을 이용하여 200근 가량의 멧돼지를 포획한 D씨를 적발

<사례4> 총기를 이용한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불법포획(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07.1.20 16:00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노체2교 부근에서 공기총을 이용하여 말뚝가리(멸종위기2급), 평, 멧비둘기를 포획한 E씨 등 2명을 적발

□ 환경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총기소지 허가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밀렵·밀거래 단속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릇된 보신문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이나,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48, 6746),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시·도(시·군·구) 환경과, 일선 경찰관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밀렵·밀거래 감시단 (02-972-6066, 2323)

- 〈붙임〉 1. 연도별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2. 밀렵단속 사진
3.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시 벌칙

<붙임 1>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 연도별

(단위 : 명)

연도별	총계	밀 렷					밀거래	엽구 제작	불법 박제	포획물 미신고	기타	단속수 (합동)
		손계	중기	엽구	독극물	사냥전						
'07	764	677	632	10	5	30	3	7	0	1	76	3,912
'06	815	761	617	89	6	49	2	5	1	0	46	5,212
'05	836	776	684	42	3	47	2	1	1	0	57	2,193
'04	712	658	614	23	3	18	5	1	0	2	46	3,895
'03	969	857	795	17	2	43	9	4	0	4	95	3,600

2. 지역별('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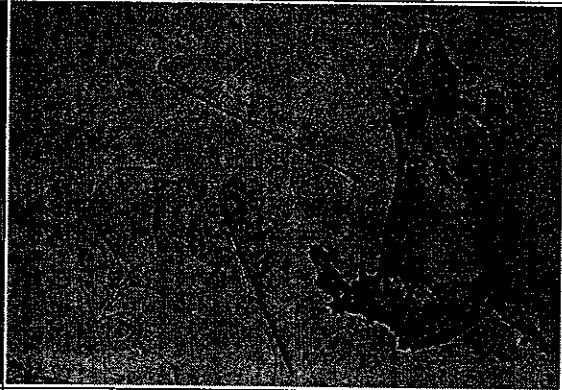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64	0	0	5	0	26	10	3	132	99	51	163	78	147	16	17	17

밀렵밀거래 관련 사진



밀렵단속 현장



조리 준비중인 오소리



불법 유통되고 있는 멧토끼, 고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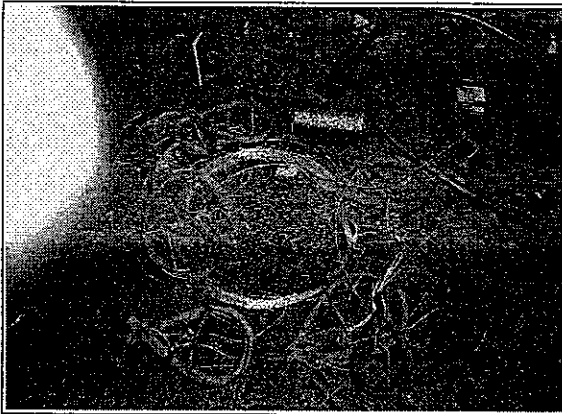
밀렵된 꿩, 고라니



밀렵된 멧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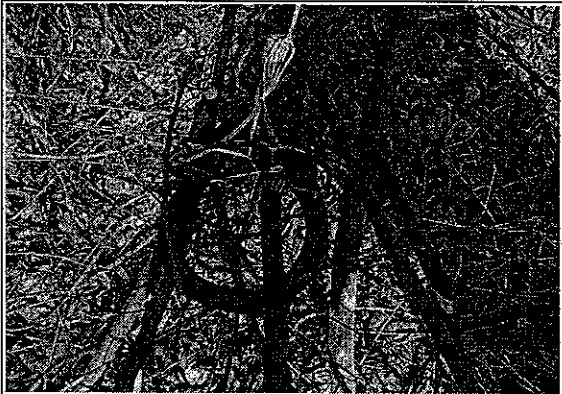
밀렵된 뱀



불법제작 엽구(을무, 뒷)



수거된 불법엽구



뒷 설치 현장



을무에 희생된 삶



뒷에 희생된 땃뒷지



을무에 희생된 교라니

<붙임 3>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시 벌칙

위반사항	벌칙	비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불법 포획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 반달가슴곰, 산양, 수달, 매, 두루미, 저어새, 황새, 구렁이, 장수하늘소 등 47종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을 건강원, 음식점 등에서 가공·유통·보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불법 포획·채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 삵, 물개, 가창오리, 큰기러기, 슬개, 올빼미, 남생이, 맹꽁이, 꼬마잠자리, 비단벌레, 소똥구리 등 114종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을 건강원, 음식점 등에서 가공·유통·보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닳·창애·울무·전류·그물 등의 설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야생동물 불법 포획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포획금지 야생동물 : 멧돼지, 고라니, 노루, 따오기, 박쥐, 멧토끼, 두더쥐, 논병아리, 족제비, 너구리, 백로, 따오기, 원앙, 두루미, 능구렁이, 살모사 등 486종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닳·창애·울무·전류·그물 등의 설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건강원, 음식점 등에서 가공·유통·보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박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박제품을 제조·판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